

발 간 등 록 번 호

서울교육 2022-36

체육건강문화예술과-3318
(2022. 2. 23.)

2022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교 보건 분야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C O N T E N T S

2022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학교 보건 분야

1.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1
2. 학생 건강검사	3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14
4. 학생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19
5. 학생 시력·구강관리	22
6.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24
7.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25
8.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27
9.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31
10. 보고 목록 및 서식	33
11. 학생건강검사 참고 서식 목록	55
12. 참고자료	74
가. 학교 보건 관리	75
나. 학생 건강검사 관리	94
다. 「2022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110

1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가. 기본방침

-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실 설치
- 2) 보건실의 내부를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설치하고, 보건실 옆(인접교실)에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제3조(보건시설 등), 같은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 참고

나. 추진방향

- 1) 학교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실 규모 및 시설·기구 확보

가) 보건실은 「학교보건법」¹⁾에 의거 66㎡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학생·교직원이 이용하기 쉽고 통풍·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설치

나) 「서울특별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²⁾에 따라 시설·기구 구비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응급처치용 기구³⁾는 각급 학교에서 필수로 구비(2013. 감사원 지적사항)

- ▶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통해 미충족 기구에 대한 보완 및 시설·기구의 작동 상태 확인·관리

※ 규칙 개정(2019. 10. 4.)관련 생리대 보건실 필수 비치 및 유료자판기 설치 금지(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2) 교육규칙 제1002호(2019. 10. 4.), 「참고자료 1」 참조

3) 응급처치용 기구(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의료용 쟁반·가제통·소독접시·상처소독용 이동식 수레,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캘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 다) 보건실은 학생들이 건강 상담을 위하여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적절한 실내온도(18℃~28℃)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냉·난방시설 설치
- 라) 신축, 개축, 증축학교는 설계 시부터 보건실 적정 규모 확보와 시설 및 기구 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보건실 설치(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지원과 협조)

2) 학교보건실 개선(현대화) 추진

가) 기간: 2022. 3. ~ 12월

나)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50개교

다) 내용

- ▶ 노후 학교보건실 현대화 개선 사업비 지원
- ▶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매뉴얼 개정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라) 주요시설 및 구성

- ▶ 보건실 공간 : 처치공간, 상담실, 안정실, 보건업무공간, 다용도 공간, 수납공간, 대기공간, 소아당뇨 학생 주사처치실 등
- ▶ 보건교육실 또는 감염병 학생 별도 관리실 : 책걸상, 교육용 교구 등

2

학생 건강검사

가. 기본방침

- 1)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강구
- 2)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상담·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3) 학생 건강검사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학생건강증진 사업 시행

나. 추진방향

1) 학생 건강검사

가)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신체 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초1·4, 중1, 고1, 특수 및 기타 학교도 동일학년 적용) 등을 적극 실시하고 교무업무시스템⁴⁾으로 관리

(1) 학생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운용

- ▶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학교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학교건강검사규칙」 2020. 1. 9.자 개정(시행 2020. 3. 1.)에 따른 건강검사 변경사항 이행 철저

※ 관련규정 숙지·적법 운영 관리 철저(‘교육부’ 및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2)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

(3)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적합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4)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⁵⁾ 및 관련 민원 적극 대응

(가) 학교단위에서 검진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질(質) 관리 조치

4)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참고자료 2」 참조

5) 학생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서식) 「참고서식 7」 참조

(나) 학생건강검진 실시기관 만족도 조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공유하고 학생검진의 내실화 도모

(다)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 요청하고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조치

2) 학생 건강검사 표본 조사

가)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변경) 운영

나) 2021년~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매뉴얼 참조

3) 별도 검사

가) 건강검사 외에 기본적인 필요 검사 실시로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 도모

▶ 별도검사 대상 및 실시 방법

구분	구강검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대상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학년 제외)	초·중·고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학년 제외)	초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학년 제외)	고등학교 전학년 (단, 건강검진학년 제외)
내용	치아·구강상태	요단백, 요당, 요잠혈	시력측정	X-선 검사
방법	검진기관에서 실시	학교건강지원협회(강동지역) 한국학교보건협회(강서지역) 학교방문 검진 ※ 단, 학교 자율적으로 검사기관 지정·운영코자 할 경우, 학운위 심의 후 결정 (검사결과는 서식1-1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	교직원 실시	대한결핵협회 학교방문 검진

* 한국학교보건협회(서울시지부: ☎ 782-7527, 팩스 785-7528)

* 학교건강지원협회(☎ 954-3011, 팩스 954-3012)

*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결핵☎ 793-4894, 팩스 793-4898)

나) 시력검사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실시

(중·고등학교급의 경우 필요 시 자율 실시)

다) 별도검사 비용은 법령에 의거 반드시 편성하여 시행하며,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 편성 지원

라) 별도검사 결과 관리 및 조치

- (1) 학교의 장은 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일자, 검사명, 검사기관)하고, 학생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에 기재 관리
- (2) 흉부X-선 검사결과 유소견(폐결핵)자는 각 구 보건소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여 치료여부 확인 등 집중 지도·관리
- (3) 소변·시력검사의 이상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 관리 철저

마) 별도검사 실시에 따른 협조 사항

- (1) 학교의 장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변검사, 결핵검사에 적극 협조
- (2) 별도검사(소변, 결핵) 실시 기관은 소변검사, 결핵검사 실시 시 학교 학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하고, 검사당일 결석 등의 사유로 검사에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
- (3) 소변검사 실시 기관은 소변검사 결과 이상자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 (4) 결핵검사 실시 기관은 결핵검사 결과 결핵환자(의심자)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보호자 통보)

바) 소변검사 검사기관 관할 지역



소변 검사기관	지역구	비고
학교건강 지원협회 (강동지역)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1개 자치구 관내 학교
한국학교 보건협회 (강서지역)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14개 자치구 관내 학교

다. 학생 건강검사 세부 추진 계획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의3(건강검사항목)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6조(별도의 검사)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2021.12.31.)
- 건강검진 운영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기획부-3439호 2021.8.2.)
-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17호 2020.2.13.)

1) 건강검사의 실시

학생건강검사	신체발달상황	- 키 - 몸무게 *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 가능	1학기 말까지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구조화된 문진표 조사) *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 가능	1학기 말까지
	정신건강 상태 검사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	4월 중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	연중
별도검사	- 구강검진 - 소변검사 - 시력검사 - 결핵검사		연중

2) 학년별 건강검진 내용

구 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기본 공통항목	척추, 눈·귀·콧병·목병·피부병, 구강, 소변검사, 혈압(단, 구강은 초등학교 전학년)			
추가 항목	비만학생: 허리둘레, 혈액검사(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 AST·ALT)			
	결핵검사		결핵검사 혈색소(여학생)	

3) 기본 방침

가) 학교의 장은 원활한 건강검사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당해학교 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환류 실시

나) 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교의 장이 실시

※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검사 이외의 건강검사 일체 불허

다) 검진기관은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건강검사결과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

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⁶⁾ 중 의과·구강 각각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

4) 세부 추진 내용

가) 실시기간 : 2022. 3월~11월 말

나) 검사대상 및 방법

구분	신체발달상황 ⁷⁾	건강조사 ⁸⁾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	별도검사
대상	전학년	전학년	초 1·4, 중·고 1학년	초 1·4, 중·고 1학년 및 이에 준하는 특수·각종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해당연령 1·4학년 *구강검진(초 전체) 포함	- 소변 :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 시력 : 초 2·3·5·6학년 - 결핵 : 고 2·3학년
방법	키, 몸무게 측정 (교직원 실시)	건강조사 설문지에 의한 조사 (교직원 실시)	온라인/서면 (필요시) 검사 (초: 학부모, 중·고: 학생 실시)	검진기관에서 실시	- 구강 : 검진기관에서 실시 - 시력 : 교직원이 실시 - 소변 : 학교건강지원협회 한국학교보건협회 (학교방문검진) - 결핵 : 대한결핵협회 (학교방문검진)

* 특수학교(28교)는 대한결핵협회 및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 출장검진 실시

※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검진 제외: 광성하늘빛학교, 누리학교, 수도사랑의학교, 효정학교

6) 일반검진·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고자료 12」 참조

7)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참고자료 8」 참조

8) 건강조사 설문지(서식) 「참고서식2」 참조

다) 추진방법

(1) 학생 건강검사 계획 수립

(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되 누락학생이 없도록 조치(특히 전입생, 운동부 선수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1년 건강검진 미 실시 학생 포함,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검진 실시

※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학년이 대상이므로, 2021년 검진을 연기한 경우라도 다음학년도(2022학년도)에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

(나) 검진기관에 방문검진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을 위해 검진시기, 1일 검진인원 등을 조정·협의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교와 검진기관 사전예약제, 방학 및 토요일을 이용한 검진으로 혼잡과 불편감 등의 불편사항 해결

(2) 검진기관 선정

(가) 학교의 장은 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고 전산처리 등이 가능한 의과·구강 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일반검진기관 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불가

(나) 다만,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다음의 학교에 한하여 교육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1개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6호)

- ▶ 검진대상 각 학년의 학급이 3학급(학급당 26명 기준) 이하인 학교
- ▶ 학교소재(동 단위) 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이 적거나 없는 경우
-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체육건강문화예술과-23595(2021.12.9)호에 의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2학년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 1곳 선정 및 출장검진의 경우 한시적 승인(2022학년도까지)

- (다) 검진기관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2항」)
- (라)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3) 검진기관 계약체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 (나) 검진준비, 검진항목 및 검진비용부담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손해배상 이행, 개인정보 보호 등 유의사항 명기
- (다)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 『학생건강검사 참고 서식 목록』 참조
 - ▶ 검진기관과 계약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반드시 확인 (검진기관 검색은 건강관리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4) 검진결과처리

[학교]

- (가) 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및 질병의 예방조치 등의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
- (나) 검진결과 긴급히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감염성질환(의심자 포함)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또는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고 사후관리 철저
 - ※ 감염성질환자(의심자 포함, 특히 결핵)일 경우에는 바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결핵관리 지침 중 “학교 내 결핵관리 체계” 철저히 준수
- (다)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대책 강구

(라) 검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구강검진결과통보서는 건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 초등학교 2·3·5·6학년에 대한 구강검진결과도 동일하게 처리

(마)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검진 기관]

(가) 검진기관은 검사결과통보서에 검사결과, 종합소견, 조치사항, 검진일, 판정 의사명, 검진기관명 등을 빠짐없이 기록

(나) 학생건강검진결과는 판정구분 참고치를 적용

(다) 정밀검사 요함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⁹⁾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¹⁰⁾는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 학생 또는 보호자,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도 초1·4학년과 동일하게 처리

(라) 학생의 인적사항 및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철저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p66) 참고

(마)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운영세칙」 제2장 제6조 제3항에 따라 5년간 보존

(5)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학교로 검진비용 청구¹¹⁾

(나) 학교는 검진기관 비용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진비용 지급

9)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작성요령 「참조자료10」 참조

10)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작성요령 「참조자료11」 참조

11)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서식) 「참고서식 6」 참조

라) 검진기관 준수사항

- (1)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가) 일반검진 문진표
 - (나) 구강검진 문진표
 - (다) 검진 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 (2)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3)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 관리 철저
- (4)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5)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 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데이터베이스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 검진기관 자격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 적용

마) 검진비용(*1인당) : 건강검진 소요예산은 법령에 의거 반드시 편성·시행

(단,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는 별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 부족 시 학교 자체예산 등으로 지원)

(1) 건강(구강)검진료¹²⁾

(금액단위 : 원)

구분		초		중	고	비고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남	정상	17,430	17,430	25,580	25,580	o 산정 기준 -구강검진: 7,830원 -결핵검사(중·고) : 필름촬영 금액
	비만		34,070	42,220	42,220	
여	정상		17,430	25,580	26,610	
	비만		34,070	42,220	43,25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2021.12.31. 「건강검진 실시기준」수가 적용

※ 건강검진료는 결핵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참고자료 7」 반드시 확인)

12) 학생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비용 「참고자료 7」 참조

(2) 별도검사로

(금액단위 : 원)

구분	소변검사	결핵검사		비고
		고2	고3	
1인당 검사비용	800	지방자치단체 지원	3,600	

※ 소변검사 후 이상자는 병·의원에서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

(3)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 비예산

바) 학생 건강검사 실시의 예외사항

해당연도 9월 이후 신설·재개교 학교로서 부득이한 경우로 해당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교육장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연도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를 생략하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필요 시 현장 지도·점검

- ▶ 건강 검진비 허위청구, 이중청구 등 부당 청구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검진비의 환수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등에 의거 강력 조치

나) 신체발달상황 NEIS 자료는 연도별로 다운로드하여 통계자료 보유

다) 학생 건강검사 관련 각종 보고사항 제출 : 보고 목록 및 참고서식 참조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가. 기본방침

- 1)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및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 대책」 추진으로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 학생 및 학부모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 대상 연수,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
- 2) 학교 예방교육 및 방역체계(소독 및 방역물품 비치 등) 구축 등 학교의 감염병 예방·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나. 추진방향

- 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 가)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단위의 학생감염병관리조직 편성·운영
 -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학교 내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및 조치계획 수립·추진
 - 나) 학교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물품 확충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방역물품 구비
- 2) 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지속 추진
 - 가) 학생 손 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화
 - 1일 8회 30초간 손 씻기(1830)운동 전개

-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을 확충(복도, 식당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도 온수공급으로 충분한 손 씻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개선
 - 비누, 종이타월, 손 건조기 등 손 닦는 비품, 휴지 비치 및 개인 손수건 휴대하기 등
 - 나) 학생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빈발 감염병(증상 포함)에 대한 예방(대응)수칙 등 보건교육 실시
 -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개발 및 보급(2016년)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을 선정하여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제공(2017년)
 - ▶ 호흡기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2020년)
 - 다) 학부모용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 시 가정에서의 협조 및 유의사항 등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학부모용 리플렛 활용)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제공
-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학교보건-‘감염병 예방’ 게시판 참고
- 라) 교원 및 교육(지원)청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한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보건(담당)·담임교사 대상 원격연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등) 과정 개설·운영(중앙교육연수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3)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가) 국가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
- 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학교보건법 제10조)
- 다) 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기록은 나이스(NEIS)와 질병관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초등학교는 만 11~12세 실시하는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중학교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나이스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미접종 학생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판 10일 이상 게재 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절차 안내, 정보화담당관-12439(2014. 10. 31.)호]
- 라) 매 학년도(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가 종료되기 전 나이스(학생건강기록부)에 접종 관련 기록 등 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
- 마) 외국에서의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학생 전입 시 예방접종 내역(예방접종 증명서)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미접종 학생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바) 학교 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 접종 시에도 사전 예진 철저히 부작용 방지
- 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학교 내 확산 방지 노력
 -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적극 홍보

4)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가)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 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나이스(NEIS)를 통해 즉시 환자 발생 현황 보고 및 통계관리
 - ※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특이사항보고 등 자체 보고형식으로 같음
 -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여부를 판단
 -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유행의심상황 발생 시 감염병 발생 예·경보제 발령(SMS)

- ▶ 발령기준: 동일 학급 내 2명 이상 또는 학교 전체인원 중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자가 5%이상 발생 시 유행상황 전파
- ▶ 대상 감염병(11종): 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결핵, 유행성 결막염, 수족구병, 백일해, 성홍열, 뇌수막염, 신종·재출현 감염병

※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유행주의보 발령 상태인 경우 별도 유행경보 미발령

- ▶ 학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 긴급방역조치, 언론취재 및 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서면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교육부) [서식 9]

나) 학교보건진흥원(<http://bogun.sen.go.kr>)의 ‘감염병 발생 주간소식지’ 적극 활용

- 학교 감염병 발생현황(NEIS 자료 통계분석), 역학정보, 예방대책 정보 등 제공

다) 집단으로 발병하였거나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의 대책 협의회를 통해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 지역 내 감염병 발생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보건소에 신고

라) 학교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필요 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학생이 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 교직원 결핵검진 강화(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 학교 교직원은 결핵검진(흉부방사선 촬영 등)을 매년 실시하고, 신규채용 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단,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해당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25. 학생 건강검진 및 교직원 결핵검진’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2022학년도 예산 및 2021학년도 결산지침」 제6장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25. 학생 건강검진 및 교직원 결핵검진’에 의거 학교 교직원 결핵(잠복결핵) 검진 소요예산을 학교운영비에서 편성지원할 수 있음

〈2016~2020. 서울시교육청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주요내용〉

대응단계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추진시기)
사전 예방 강화 (평상시 예방 관리)	1. 감염병 교육·연수 강화	- 교육자료 보급 및 활용 점검(2017~) - 학교관계자[교장(감), 보건교사, 담임교사]사이버 연수 실시 (2017~) - 교육지원청, 학교보건진흥원 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감염병 전문연수 실시(2016~)
	2. 예방접종 확인 및 해외 출국자 관리 강화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2016~) -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2017~)
	3. 필수방역물품 확보	- 학교별 필수 방역물품 확보 권장(2017~)
발생 초기 대응강화 (확산방지 체계정비)	1. 감시체계 모니터링 강화 및 유행 경보제 운영	- 학교에서 감염병환자 발생 시 능동적 환자파악 체제로 전환(2017~) - 학생 감염병 발생 주간소식지 제작·보급(2016~) - 학교 감염병 발생 예·경보제 운영(2016~) - 교육청 단위 학교 감염병 관리 대응반 운영(2017~)
	2. 학생 감염병 관리 강화 홍보 및 등교중지 기준 실천 모니터링	- 가정 내 관리 강화를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2017~) ※ 다문화·외국인 가정 학부모용 홍보·교육자료 별도 제공: 외국어 버전 - 감염병별 등교중지 기준 명확화 및 인근학교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 생활지도 강화(2017~)
	3. 선제적 학교 결핵 예방 사업 운영	- 선제적 예방사업을 통한 학생 결핵환자 발생 사전 방지(2017~) - 결핵환자 다빈도 발생 학교 집중관리 실시(2016~)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1. 매뉴얼 보급 및 활용 점검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급 및 활용 점검(2017~) - 학생 감염질환 증상에 따른 대응 가이드북 제작·보급(2016~)
	2. 대응훈련 참여 및 정례화	- 모든 교육기관의 연 1회 이상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정례화(2017~) ※ 교장(감), 행정실장, 보건 및 담임교사, 보건소담당자 등 참여
	3. 보건당국 및 관련 기관과 공조 강화	-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업강화로 역할분담 명확화(2016~) ※ 서울시(감염병 관리 본부) 등과 핫라인(hotline) 운영
일상 복귀를 위한 조치 강화	1.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 수업결손 최소화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2017~) -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안내(2016~)
	2.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 환자·격리자·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자료 보급(2017~) ※ 심리지원 대치요령에 대한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교육부 개발 예정) ※ 불안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지원(학교보건진흥원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 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강화	1. 유치원 및 학원 관리체계 운영	- 유치원생 감염병 관리(보고체계 등) 및 위생교육 강화(2017~) ※ 감염병 발생 별도의 보고체계 구축(2018~) - 학원 감염병 관리 강화(2017~)
	2. 감염병 전담인력 배치	- 교육청 및 학교 감염병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확보(2016~)

※ ‘학생 감염병 예방 2차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종식 등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 예정이며, 우선은 기존 종합대책을 준용하여 추진

4

학생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가. 기본방침

흡연, 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 음주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나. 추진방향

1)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

가) 학생 및 교직원의 담배제품 사용률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교직원이
술선수범하여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유도

나) 학교 내 자율적인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운동 강화

(1) 보건교사·생활지도교사·상담교사 등은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흡연

청소년은 정기적인 상담, 외부기관(의료기관) 연계 등으로 지속 관리

(2) 교직원 연수, 학부모 교육 시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운영

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금연시설) 관리 강화

(1) 학생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¹³⁾·운영([참고자료 6] 참조)

▶ 학교장은 교내 흡연구역(흡연실) 설치를 금지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금연 환경 조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제2020-601호, 2020. 12. 7.)

▶ 구청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¹⁴⁾·
운영

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2) 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 방지

- ▶ [교직원 대상] 학교 관계자(학교장, 교직원,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는 학교 내외 금연구역에서 교직원의 흡연 위반행위가 확인(자체 점검, 민원, 신고 불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 조치(금연지도, 과태료 부과 등)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흡연위반 교직원은 금연 전문교육기관(금연클리닉 등)의 금연프로그램 이수
- ▶ [외부인 대상] 금연구역 내에서 일반인 또는 학교 방문객 등 외부인의 흡연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학교 관계자는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
- ▶ [사전 안내]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교 방문객 등에게 강화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침에 대하여 사전 안내(학부모 대상 협조 안내문 등)
- ▶ [민원 대응] 교직원 및 학교 방문객이 관할 보건소 통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할 의무가 있는 교육시설 운영자의 당연한 책무이며, 불법 흡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로써, 공직자는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제2020-601호, 2020. 12. 7.)

(3) 학생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 홍보 캠페인 전개

- ▶ 금연구역 조기정착, 금연실천 환경 조성
- ▶ 금연구역 및 법규 준수사항 안내
-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홍보
- ▶ 학교주변 자율 금연거리 조성 등

(4) 학교 주변 금연시설(금연구역)¹⁵⁾, 담배판매업소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실시

- ▶ 자치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사 및 민간단체 등으로 감시단 구성
- ▶ 학교 밀집 지역,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 등으로 월 1회 이상 감시단 활동

1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5) 학교장은 학생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활동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하는 금연 홍보 캠페인, 감시단 활동 등에 적극 협조
- (6) 학교장 및 교육장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금연사업,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업 등에 적극 지원·협조

2) 학교 내 체계적인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 교육 실시

- (1)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2)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 및 학교장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교육 강화
- (3) 중·고등학교에서는 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누구든지 학교 내 주류(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를 반입되지 못하도록 교육·지도 실시
- (4)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20. 6. 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마약퇴치운동본부 학교급별 동영상, 교사 지도서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활용

나)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된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다)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3) 행정사항

교육지원청은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5

학생 시력 · 구강관리

가. 기본방침

- 1) 시력 보호를 위한 기준 조도(교실 300Lux이상) 확보, 조명, 채광 유지 · 관리로 적정 학습 환경 조성
- 2)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강화하고, 점심식사 후 양치 실천을 통해 구강 건강증진 도모

나. 추진방향

1) 학생 시력관리 강화

가) 학생 시력저하 예방교육 강화

- ▶ 올바른 독서법, 스마트폰, 컴퓨터 · TV 시청 지도, 올바른 안경 사용방법, 컴퓨터 전자파로 인한 VDT증후군¹⁶⁾ 예방대책 등 학교와 가정에서 근시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실시

나) 교실 내 적정 조도 관리 방안 강구

- (1) 자연조명의 경우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커튼, 버티컬 블라인드 등 보완책 강구
- (2) 인공조명의 경우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Lux 이상 유지하고,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다) 학생건강검사 결과, 시력 교정대상 · 교정학생 시력 관리강화

- (1) 고도근시 · 저시력 · 기타 안과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과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안내

16) VDT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TV, 비디오 게임기, 컴퓨터 등을 장기간 사용, 반복적 키보드사용, 적절치 않은 조명, 좋지 않은 자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눈의 장애, 두통, 목, 어깨, 손,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적 증후군

- (2) 고도근시 학생의 경우 과중한 운동금지(망막박리로 인한 실명의 원인 제공)
 (3) 저시력 학생(교정시력 0.04~0.3)에 대한 학습지도 대책 및 특수교육 연계
 라) 유치원 원아 자가시력 검진 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협력사업, 학교보건진흥원)
 마)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체험학습 운영(학교보건진흥원) : 2022. 4월~11월

※ '유치원 유아 시력증진 사업', '찾아가는 눈 건강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2022년도 세부계획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별도 공문 시행

2) 학생 구강관리 강화

가) 양치 실천율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강화

- (1)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식사 후 칫솔질의 중요성 교육 실시
 (2) 학교단위 칫솔질 실천 캠페인 전개를 통한 개인 양치도구 지참과 양치습관 생활화 분위기 확산
 (3) 자치구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강보건사업(치과주치의 사업 등) 전개

※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세부내용 별도 공문 시행 예정)

구분	초등 4학년
사업대상	25개 자치구 학생
사업내용	• 학교구강검진과 연계 • 지역치과의원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 교육,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 •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지원범위	1인당 48천원

- (4) 구강검진&치과주치의 통합 전산화 시범사업 확대
 ▶ 2021년 2개 자치구 실시(중랑구, 동작구)
 ▶ 2022년 11개 자치구 확대 실시(중랑구, 동작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5)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양치시설(수도시설) 확충(복도, 화장실 등)

※ 2013년도부터 서울특별시의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사업 지원 중단으로 학교자체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사업)협조 요청 등을 통해 세면시설 추진 노력

6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가. 기본방침

- 1)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복지 향상에 노력
- 2)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명량한 학교생활 영위 및 안정화 추진

나. 추진방향

1)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가)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나)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다)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 2022. 3월~12월, 서울 관내 희귀난치성 학생 중 150명 지원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2) 심장질환 학생 관리

가)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022년도 심장질환 학생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수술, 시술) 지원방안 모색으로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며, 각급 학교의 대상자 파악 및 검사 안내

나) 저소득층 가정 학생 중 수술·시술 대상자는 의료기관과 연계 무료 수술·시술 추진

※ 심장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등 2022년도 세부계획은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별도 공문 시행

3) 의료비 지원(이주학생)

가) 미등록 이주학생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의료비 지원

나)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지원

※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7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가. 기본방침

- 1)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나. 추진방향

1)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가) 기존의 교육부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예산 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 교육부 : 건강증진학교 운영실적, 사례 등 자료집 발간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 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사업) 발굴·보급,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참고〉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구분	특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의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역 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학교 중심)

2)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가)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나)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3)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역량 강화 지원

가)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

※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나)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16년~)

8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가. 심폐소생술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1) 기본방침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2) 근거

가) 학교장은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3) 추진방향

가) 학생·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1) [학생]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학교보건진흥원”에 탑재된 「심폐소생술 학생 교육 자료」 적극 활용

※ 학교보건진흥원(<https://bogun.sen.go.kr>) > 자료실 > 교육자료

(2) [교직원]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17)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1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참고자료17」 참조

- ※ 체육건강문화예술과-1971(2021. 2. 8.)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의무 교육시간 이수 유예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결정 (2020.6.19.)」, 2022년의 경우 교직원 백신접종을 및 일상회복 추진 등을 고려해 정상 시행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 검토 후 추진 필요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

나. 소아당뇨 등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1) 기본방침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2) 근거

가)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 가능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32호, 2020. 1. 9., 제정)

3) 추진방향

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1)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가)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여, 조기발견을 통한 관리체계 및 지원계획 수립

(나) 교육장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현황 관리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소아당뇨 학생은 학교의 모든 수업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관리대책(비상시 행동요령, 비상관리 물품장소, 비상연락망 등) 수립

(라) 각급 학교에서는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건실 등 안전한 공간을 투약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소아당뇨학생 지원을 위한 응급관리물품 구입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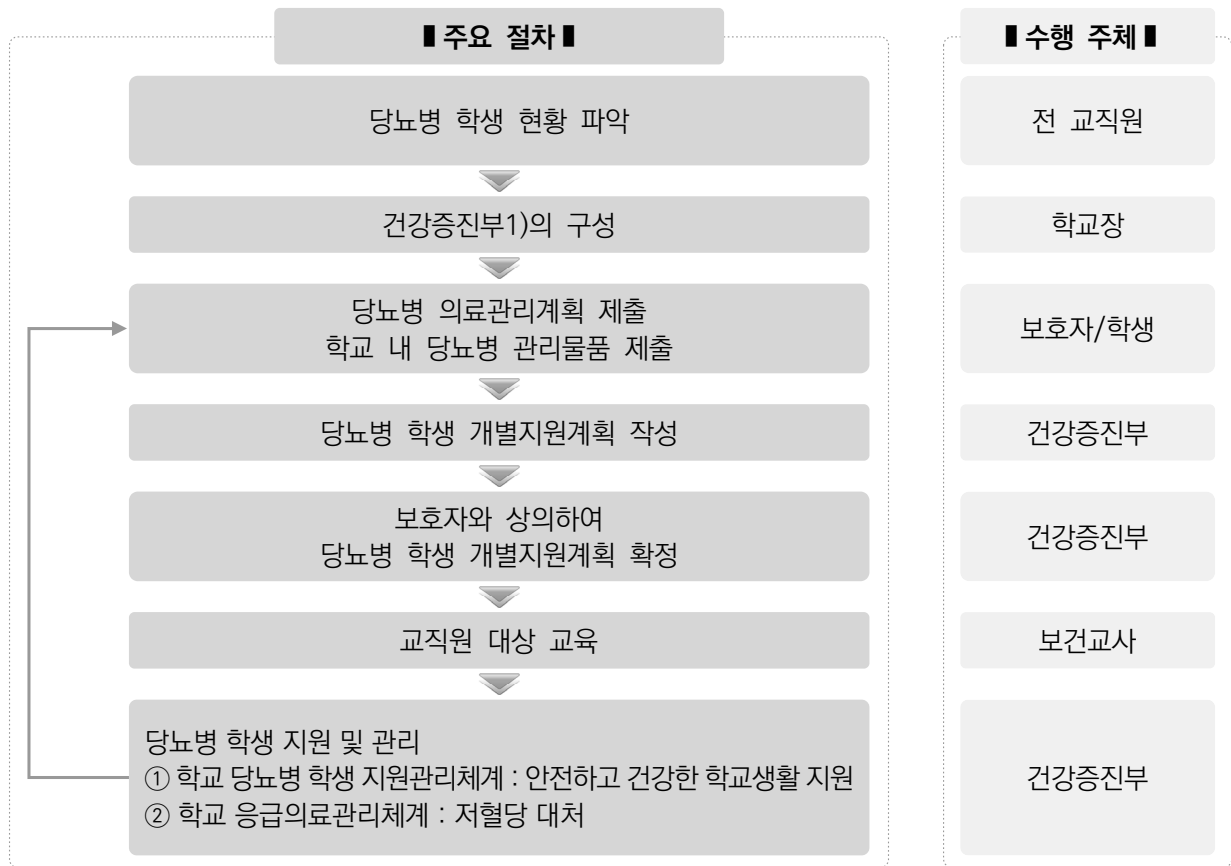
-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비상관리물품을 보관할 장소 등 확보

※ 소아당뇨 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지원은 금지

(마)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때 소아당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바)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이 마련·시행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 기존 학생건강증진관련 부서의 역할 강화 · 보완 등을 통한 추진 가능

(2) 소아청소년 당뇨 학생 건강복지 증진 지원

- 생애주기별 당뇨병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능력 함양
- 가정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마련

9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가. 기본방침

학생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서울교육 발전과 주요정책 추진성과가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학교보건정책의 발전과 관계자의 사기 진작

나. 추진방향

1) 학교보건 유공교(자) 표창

- 가) 교육부장관 표창(보건, 교육환경, 학교주변유해시설합동단속, 학교감염병 예방종합 대책종합추진, 학교기반정신건강대책추진 유공 등)
- 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보건의 날,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흡연예방 유공 등)
- 다)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보건, 학교교육환경보호, 흡연예방 유공 등)
- 라) 기타 유공 표창

2) 유공교(자) 주요 표창 일정

- 가) 교육부장관 표창 : 2022. 11월 대상 추천, 12월 표창수여
- 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추후 안내
- 다) 학교보건 분야 등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 : 2022. 11월 대상 추천, 12월 표창수여

3) 유공교(자) 표창기준

- 가) 보건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및 내실화 추진
- 나) 학생 참여중심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 학교 건강증진교육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혁신적 운영
- 라) 건강검사 결과분석 활용 및 객관적 건강지표에 근거한 학생 건강관리
- 마) 학생의 건강한 보건행태 유발 및 학생 비만예방과 흡연, 음주 등 불건전한 건강행태 개선 추진

- 바)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선제적 대응·추진
- 사) 생활 속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 아) 정신건강증진교육을 통한 학생 정서적 건강관리 도모(관심군 학생 2차 연계율 제고 등)
- 자) 기타 특색있는 학교 보건업무 추진 활동

4) 행정사항

교육지원청의 추천대상자(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공적에 대하여 자체 심사(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서울특별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 2022년도 학교보건 우수교(유공자) 표창 세부추진 계획은 별도 시행

10

보고 목록 및 서식

보 고 제 목	보 고 기 일	보 고 기 관 (작성기관)	보 고 처	보고서식	보고방법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2022. 12. 7.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1-1 서식 1-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12. 14.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2. 12. 7.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2-1 서식 2-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12. 14.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2022. 12. 7.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3-1 서식 3-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12. 14.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생 별도검사 추진 현황	2022. 12. 9.	한국학교보건협회	시교육청	서식 4-1	서면보고
		한국건강지원협회		서식 4-2	
		대한결핵협회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2022. 12. 20.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5-1 서식 5-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12. 30.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2022. 12. 16.	유·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6-1 서식 6-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12. 23.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2. 4. 21.	초·중·고	교육지원청	서식 7-1 서식 7-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4. 28.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2022. 4. 20.	초·중·고	교육지원청	서식 8-1 서식 8-2	서면보고 (자료집계 시스템)
	2022. 4. 27.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감염병 발생 현황	발생 즉시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	NEIS보고 (서면보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보고	보고사항 발생 시	초·중·고· 특수·각종학교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서식 9	서면보고 (전자문서)

※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자료집계시스템 등으로 보고를 받고, 서울시교육청에 각 서식에 따라 보고

[서식 1-1]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 초	☐ 중	☐ 고

기관명 : 00학교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정 상 (%)	남자	()	()	()	()	()	()
		여자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비 만 (%)	남자	()	()	()	()	()	()
		여자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 · 몸무게 평균은 성별 · 학년별 수검자의 키 · 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3. 비만율은 성별 · 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 · 정상 · 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 · 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 보고기한 : 2022. 12. 7.

[서식 1-2]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 초	☐ 중	☐ 고

기관명 : 00교육지원청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정 상 (%)	남자	()	()	()	()	()	()
		여자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여자	()	()	()	()	()	()
	비 만 (%)	남자	()	()	()	()	()	()
		여자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몸무게 평균은 성별·학년별 수검자의 키·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3. 비만율은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정상·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 보고기한 : 2022. 12. 14.

[서식 2-1]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학교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 소요비용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초등학교의 경우, 1·4학년)

2.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단위 : 명, 천원)

학년	전체 학생수 (2·3·5·6학년)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2·3·5·6학년, 소요비용은 학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3. 별도검사 실시현황

○ 검사실시 현황(별도검사 대상 학년만 작성)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검사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 작성요령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검사비용은 학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대상 학년
 - 소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한 경우에만 작성. 한국학교보건협회, 한국건강지원협회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미작성)
 - 시력: 초 2·3·5·6학년

■ 보고기한 : 2022. 12. 7.

[서식 2-2]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교육지원청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특수학교)

2.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2·3·5·6학년)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남	여	남	여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3. 별도검사 실시현황

○ 검사실시 현황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검사비용 (천원)	전체인원	검사인원	정상인원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초·중·고등학교)

※ 작성요령

- 서식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검사비용은 학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대상 학년
 - 소변: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한 경우에만 작성. 한국학교보건협회, 한국건강지원협회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미작성)
 - 시력: 초 2·3·5·6학년

■ 보고기한 : 2022. 12. 14.

[서식 3-1]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년도	
☐ 남	☐ 여

학교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시력	근·골격 및 척추										
	교정대상	교정한 학생수									
		안 질환									
귀	청력 장애										
	귀 질환										
	코 질환										
구강	치주 질환										
	부정교합										
	고혈압										
혈압	요단백										
	요삼혈										
	검사인원										
각종 검사	혈액 (I)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검사인원									
	혈액 (II)	혈색소									
		검사인원									
	흉부 방사선										

※ 제출처 : 교육지원청

※ 작성방법[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검사인원수 기재 요망]

1. 이 통계표는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만 기재
2. 시력 교정대상 : 안경(콘택트렌즈) 미착용학생 중 어느 한쪽의 나안시력이 0.70이하인 학생수 기재
3. 시력 교정한 학생수 : 안경(콘택트렌즈) 착용한 학생 기입(안경착용 후의 시력이 0.70이하인 학생도 포함)
4. 남, 여별로 각각 작성

■ 보고기한 : 2022. 12. 7.

[서식 3-2]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년도	
☐ 남	☐ 여

기관명 :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눈	시력	근·골격 및 척추									
		교정 대상									
		교정한 학생수									
귀	청력	안질환									
		장애킷									
		병									
구강	치주	코트									
		목									
		부									
혈압	소변	총									
		치주 질환									
		부정교합									
소변	요	고혈압									
		단백									
		잠혈									
각종 검사	혈액 (I)	검사인원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각종 검사	혈액 (II)	HDL									
		중성지방									
		LDL									
각종 검사	혈액 (II)	AST, ALT									
		검사인원									
		혈색소									
각종 검사	혈액 (II)	검사인원									
		혈색소									
		검사인원									
각종 검사	혈액 (II)	검사인원									
		혈색소									
		검사인원									

※ 제출처 : 시교육청

※ 작성방법[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검사인원수 기재 요망]

1. 이 통계표는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만 기재
2. 시력 교정대상 : 안경(콘택트렌즈) 미착용학생 중 어느 한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 기재
3. 시력 교정한 학생수 : 안경(콘택트렌즈) 착용한 학생 기입(안경착용 후의 시력이 0.7이하인 학생도 포함)
4. 남, 여별, 남녀합계별로 각각 작성
 - * 기타학교는 해당 학교급에 포함

■ 보고기한 : 2022. 12. 14.

[서식 4-1]

학생 별도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협회

□ 학생 소변검사 현황(총괄표, 자치구별 작성)

(단위 : 명)

학교 급별	지정 학년별	성별	검사 대상자 수	검사 자수 (A)	소 변 검 사 결 과							검사 학교 수	비고
					정상 (B)	단백 양성 (C)	당 양성 (D)	혈뇨 (잠혈) 양성 (E)	단백/당 /잠혈 동시양성 (F)	기타 소견 (G)	계 (H)		
초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중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고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서식 4-2]

학생 별도검사 추진 현황

기관명 : ○○협회

□ 학생 결핵검사 현황(총괄표, 자치구별 작성)

(단위 : 명, 교, 천원)

학교 급별	지 정 학년별	성별	검 사 대상자수	검사 자수 (A)	결 핵 검 사 결 과							검사 학교수	비고
					정상 (B)	활동성 (C)	비 활동성 (D)	활동성 미정 (E)	의사결 핵 (F)	기타 (G)	계 (H)		
고	2학년	남											
		여											
		계											
	3학년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보고사항

* 소변검사 및 결핵검사 현황은 해당기관에서 각각 통계를 처리하여 서식 (4-1) 및 (4-2)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고생략

■ 보고기한 : 2022. 12. 9.

[서식 5-1]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학교

1. 흡연,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명	교육 실시 여부(O, X)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구강관리

※ 7대 안전 교육¹⁸⁾ 실적 포함

▣ 보고기한 : 2022. 12. 20.

18) 2021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의 탄력적 편성·운영 안내(정책안전기획관-610, 2021. 1. 22.)

[서식 5-2]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1. 흡연, 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각종	특수	초	중	고	각종	특수
흡연예방										
음주예방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 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각종	특수	초	중	고	각종	특수
건강한 체중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각종	특수	초	중	고	각종	특수
구강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보고기한 : 2022. 12. 30.

[서식 6-1]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학교

☐ 학생 교육 실시현황

1. 전체 현황

보건교사배치여부(해당란에 o표)	
보건교사 배치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 기간제 보건교사 포함

2. 교육활용 시간 현황 ※ 중복표기 가능

교육에 활용한 시간(해당란에 o표)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3. 교육실시 학년 현황

교육실시 학년(해당란에 o표)		
1개 학년 교육	2개 학년 교육	3개 학년 이상 교육

*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4.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학교 내부 강사활용(해당란에 o표)			외부기관 강사 초빙(해당란에 o표)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 현황

(단위 : 교)

심폐소생술 교육(해당란에 o표) ※ 중복표기 가능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외부기관 위탁 실시

2.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명)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교육 미이수 사유

1)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이 미이수한 경우, 이수실적에서 제외

3. 학교내 자체교육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학교내 자체교육 실시한 경우(해당란에 o표)					
학교 내부 강사활용			외부기관 강사 초빙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4.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한 경우(해당란에 o표)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타 (민간기관 등)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보고기한 : 2022. 12. 16.

[서식 6-2]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 실시현황

1. 전체 현황

(단위: 교)

구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각종					

* 기간제 보건교사 포함

2. 교육활용 시간 현황

(단위: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에 활용한 시간 ※ 중복표기 가능				미실시 학교수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초						
중						
고						
각종						

3. 교육실시 학년 현황

(단위: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실시 학년			미실시 학교수
		1개 학년 교육	2개 학년 교육	3개 학년 이상 교육	
초					
중					
고					
각종					

4.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교)

구분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수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수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각종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전체 현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E)=(A+B+C+D)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A)	외부기관 위탁(B)	병행(C)
유				
초				
중				
고				
각종				
특수				

2.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A+B+C)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D)
유					
초					
중					
고					
각종					
특수					

1)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이 미이수한 경우, 이수실적에서 제외

3. 학교내 자체교육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교)

구분	학교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 수 (A+C)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각종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4.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 중복표기 가능

(단위: 교)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B+C)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타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각종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보고기한 : 2022. 12. 23.

[서식 7-1]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기관명 : ○○학교

□ 소아당뇨(제1형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1. 4. 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급별	학교명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없는 학교에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 (있으면 ○, 없으면 공란)	보건교사 * 미배치교의 소아당뇨 학생 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 (있으면 ○, 없으면 공란)	소아당뇨 학생 수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 보건교사는 기간제교사 포함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급별	학교명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 중복표기

(단위 : 명)

급별	학교명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 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 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 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보고기한 : 2022. 4. 21.

[서식 7-2]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2. 4. 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비고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 중복표기

(단위 : 명)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보고기한 : 2022. 4. 28.

[서식 8-1]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학교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2. 4. 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단위 : 명)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비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비고 : 보호자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사유 등 기재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명)

석션(기도흡인)				
석션(기도흡인) 필요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비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비고 : 보호자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사유 등 기재

3. 인공도뇨

(단위 : 명)

인공도뇨				
인공도뇨 필요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비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비고 : 보호자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하는 사유 등 기재

■ 보고기한: 2022. 4. 20.

[서식 8-2]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교육지원청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2. 4. 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전체 학교수	재학 학교수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석션 (기도흡인)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인공도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보고기한 : 2022. 4. 27.

[서식 9]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22. 00. 00(), 00학교/ 00교육지원청〉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 (인원수)*			
'22.1.10	결핵	1	학생	2-1(1)	'22.1.3	'22.1.3	'22.1.25
'22.1.12	백일해	30	학생	1-1(10)	'22.1.3 / '22.1.11	'22.1.11	미정
'22.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22.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중간/최종)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22.1.10	최초	학생	2-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22.1.12	중간	학생	학생	1-1(15) 3-1(2) 4-1(1)	'22.1.3 / '22.1.11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백일해 환자의 형제 자매
'22.2.22	최초	학생	2-3	24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11

학생건강검사 참고 서식 목록

제 목	비 고
1. 문진표	
1-1. 초등학생용 문진표	
1-2. 중·고등학생용 문진표	
1-3. 구강검진 문진표	
2. 건강조사 설문지	
2-1. 초등학생용	
2-2. 중학생용	
2-3. 고등학생용	
3.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4.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5. 검진인력 현황	
6.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7.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8.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참고서식 1-1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채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순환기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혈액	설사를 자주 한다.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참고서식 1-2

문진표(중학생 · 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성별	☐ 남 ☐ 여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생년월일		
	성명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전신 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썹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귀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목 · 허리 · 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귀에서 맴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참고서식 1-3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 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3. 치아가 쏘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참고서식 2-1

건강조사 설문지

【초등학생용】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귀댁 자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파악과, 우리학교의 학교보건 방향 수립 및 추진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서명)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가족병력 (친·인척 분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누가?			
			부	모	형제	기타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나. 개인병력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기타질환()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 만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예 아니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이를 언제 닦습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언제:) ③ 하루 1회(언제:)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예 아니오
	자주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계단을 두 칸씩 오르거나 내려갈 때 뛸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친구가 언어적, 신체적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같이 사는 사람 중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항상 외롭다고 느낍니까?		예 아니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입니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타 건강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13. 기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 조사 내용은 동 설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며, 학생의 인권존중에 유의

참고서식 2-2

건강조사 설문지

【중학생용】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서명)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가족병력 (친·인척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누가?			
			부	모	형제	기타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나. 개인병력	구 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원진료를 받았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생리통(여학생)						
기타질환()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근골격계질환, 기타)						
2. 식생활/ 비만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다?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만	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합니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사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한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이를 언제 닦습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언제:) ③ 하루 1회(언제:)			
4.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30분~1시간 정도 ③ 1~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줍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 란 물 의 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 3회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계단을 두 칸씩 오르거나 내려갈 때 뛸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2~3일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2~3일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입니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타 건강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13. 기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주시고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 조사 내용은 동 설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며, 학생의 인권 존중에 유의

참고서식 2-3

건강조사 설문지

【고등학생용】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학교생활을 지도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서명)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예방접종/ 병력	가. 가족병력 (친·인척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가족의 의학적 병력	누가?				
			부	모	형제	기타 ()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당뇨병					
		암					
		간(간염 등)질환					
		결핵 및 폐질환					
	정신질환						
	기타(질병명 :)						
	나. 개인병력	구분	예	아니오	추후관리 (완치, 치료중, 관찰중 등)		
		지난 1년 동안 질병을 앓았거나 병 원 진 료 를 받았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병				
			천식				
			결핵				
			발작(경기 포함)				
			암				
			당뇨병				
			치과진료				
			소아 정신과 질환				
생리통(여학생)							
기타 질환()							
치료적 목적으로 학생이 계속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선천성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알레르기,근골격계질환,기타)							
○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종류	①안먹음	②매일먹음	③1-2번	④3번이상			
2. 식생활/ 비만	라면						
	음료수(주스 제외)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튀김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야채 (김치 제외)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2. 식생활/비만	식생활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① 매일식사 ② 주1~2회 식사 ③ 주3회 식사	
	비만	살을 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사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한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에서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이를 언제 닦습니까? ① 하루 3회 이상 ② 하루 2회(언제:) ③ 하루 1회(언제:)		
4.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나 일을 했습니까? ① 거의 안 했음 ② 30분~1시간 정도 ③ 1~2시간 정도 ④ 2시간 이상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잡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8시간 이상		
5. 학교생활/ 가정생활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 이상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합니까?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 ③ 일주일 3회 이상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까?		예 아니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킵니까?		예 아니오
	계단을 두 칸씩 오르거나 내려갈 때 뛸니까?		예 아니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합니까?.		예 아니오
8. 학교폭력	돈을 빼앗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아니오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개비 이상 피운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피우지 않음 ② 매일 피움 ③ 일주일에 2~3일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됩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음 ② 한 달에 2~3일 ③ 일주일에 2~3일		
10.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피임법, 에이즈나 성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사회성/ 정신건강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이상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학교성적과 학습량의 과중(학원, 과외수업, 숙제 등) ② 외모(얼굴, 몸무게, 키 등) ③ 집안의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건강문제 ④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과의 관계		
	지난 한 달 동안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합니까?		예 아니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2. 건강상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구강 검진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시력을 측정했거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타 건강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니오
13. 기타	o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할 수 있음 o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주시고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 조사 내용은 동 설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가능하며, 학생의 인권 존중에 유의

참고서식 3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 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cm		혈 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척추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중성지방		mg/dL			
		교 정	좌: 우: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mg/dL	
	귓 병										
콧 병								간 세포 효소	AST	U/L	
								ALT	U/L		
목 병							혈 색 소		g/dL		
피 부 병					결 핵						
소 변	요 단 백				혈 압	수 축 기		mmHg			
	요 잠 혈					이 완 기		mmHg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참고치[참고자료9]를 별도 안내 가능

〈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

(뒷면)

[illegible]

※ 작성 및 관리방법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위 표에 기재한다.

참고서식 4

학생 구강검진결과 통보서

(앞면)

학 교 명	학 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 · 중 · 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 · 고등학교 추가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치석형성() 치주낭(잇몸과 치아틈)형성() 그 밖의 증상()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함)	①	없음	②	있음	상 ()개 하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고등학교 추가항목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치아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 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 사 명	(인)		검진기관명	

〈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

(뒷면)

[illegible]

※ 작성 및 관리방법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위 표에 기재한다.

참고서식 5

검진인력 현황

1. 검진기관명 :

(직인)

2. 검진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의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치 과 위 생 사	임 상 병 리 사	방 사 선 사	원 무 행 정 요 원	
	소 계	일 반 의	전 문 의																치 과 의 사
			내 과	소아청소년과	일 반 외 과	가 정 의 학 과	산 부 인 과	산 업 의 학 과	진 단 검 사 의 학 과	영 상 의 학 과	병 리 과	기 타							
전체 인력																			
검진담당인력																			

※ 검진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검진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검진담당 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검진을 전담하는 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검진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검진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참고서식 6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
청구처 (학교명)				
청 구 내 역				
항 목		건강검진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기본진료)				
구 강 검 진				
소 변 검 사 (요단백, 요잠혈)				
혈액 검 사	혈액 (I)	혈 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AST		
		ALT		
	혈액 (II)	혈색소		
흉부 방사선검사	직접촬영(14"x14")			
	CR 또는 DR			
	Full PACS			
계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귀 교의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첨부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건
2.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건
3. 건강검진통계표 건

참고서식 7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예시)

조사 일자 : 20 . . . ()

학 교 명 : ○ ○ 학교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의원을 √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	2-1 ○○치과의원	
1-2 ○○의원		2-2 ○○치과병원	
1-3 ○○병원		2-3 ○○치과의원	√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치과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긴 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적인 검진 시간표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만족도 조사 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참고서식 8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¹⁾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예시)

☐ 학생 검진기관으로써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립)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항목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사. 건강검진과 관련된 검사소견 및 기록, 방사선촬영필름 및 판독 소견서 등의 검진자료는 5년간 보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5. **사고책임**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12

참고자료

[가] 학교 보건 관리

1. 학교교구·설비기준(학교보건실)
2.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3. 감염병 관련 규정
4. 결핵 관련 사항
5. 평상 시 감염병 대응 흐름도
6.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나] 학생 건강검사 관리

7.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비용
8.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10. 검진항목별 판정기준 참고치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12. 연령, 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13.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및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14.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 작성요령
15.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작성요령
16. 검진기관 지정기준(일반·구강 검진기관 지정기준)
17.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다] 2022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요약

가

학교 보건 관리

참고자료 1

학교교구·설비기준 (학교보건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02호]

영역	설비종목	규격	사용학교급	소요기준	비고
1. 일반 시설 및 기구	1. 사무용 책상·의자	적정규격	초·중·고·특수	학교당 1조	필수
	2. 건강기록부 및 서류보관장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3. 약품 및 의료기구보관장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4. 소독(멸균)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5. (냉동)냉장고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6. 가습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7. 수도시설 및 세면대(싱크대)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8. 냉·난방시설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9. 전화기(착발신)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0. 컴퓨터·프린터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1. 화이트보드(게시판)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2. TV, VCR(DVD)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3. 온·습도계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4. 순간온수기(온수설비)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5. 핸드타월(드라이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6. 물끓이는 기구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17. 스탠드라이트		초·중·고·특수		권장
	18. 세족기(샤워기 부착)		초·중·고·특수		권장
	19. 적외선 램프		초·중·고·특수		권장
	20. 진공청소기		초·중·고·특수		권장
	21. 온장고(레인지)		초·중·고·특수		권장
	22.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초·중·고·특수		권장
	23.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초·중·고·특수		권장
	24. 불소용액 양치기자재		초·중·고·특수		권장
2. 환자 안정용 기구	1. 침대		초·중·고·특수	초·특수 2조 이상, 중·고 4조 이상	필수
	2. 침구류(침대커버,이불,베게)		초·중·고·특수	초·특수 4조 이상, 중·고 8조 이상	필수
	3. 침구보관장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4. 칸막이(파티션)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5. 보온기구(전기요 등)		초·중·고·특수	학교당 1	권장
3. 건강 진단 및 상담용기구	1. 신장계, 체중계, 줄자, 좌고계	적정규격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필수
	2. 비만측정기(신장, 체중 자동측정)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3. 전기시력표, 눈가리개, 시력검사용 지시봉		초·중·고·특수	6학급당 1	필수

영역	설 비 종 목	규 격	사용학교급	소요기준	비고
3. 건강 진단 및 상담용 기구	4. 색각검사표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필수
	5. 청력계	헤드폰사용	초·중·고·특수	12학급당 1	필수
	6. 혈압계, 청진기		초·중·고·특수	학교당 1조	필수
	7. 펜라이트(인후 후레쉬)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8. 상담용 의자·탁자		초·중·고·특수	학교당 1조	필수
	9. 진찰용의자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0. 체온계(디지털 고막체온계)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1. 혈당측정기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12. 스톱워치		초·중·고·특수		권장
	13. 검안경, 검이경, 비경		초·중·고·특수		권장
	14. 치과용 거울, 탐침		초·중·고·특수		권장
	15. 척추측만증 측정자(각도기)		초·중·고·특수		권장
	16. 소아용 혈압계		초·중·고·특수		권장
4. 응급 처치용 기구	1. 핀셋, 핀셋통		초·중·고·특수	학교당 2조	필수
	2. 의료용 가위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3. 농반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4. 가제통(드레싱캔, 스폰지캔)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5. 드레싱카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6. 부목		초·중·고·특수	학교당 대중소 4조 이상	필수
	7. 구급낭(휴대용 구급기구)		초·중·고·특수	학년당 1 이상	필수
	8. 들것		초·중·고·특수	학교당 1 이상	필수
	9. (냉·온) 찜질기(팩)		초·중·고·특수	학교당 2	필수
	10. 구급처치용 침대(진찰대)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11. 소독접시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12. 목발		초·중·고·특수		권장
	13. 세안수수기		초·중·고·특수		권장
	14. 켈리(지혈감자)		초·중·고·특수		권장
	15. 휴대용산소기		초·중·고·특수		권장
	16. 경추보호대		초·중·고·특수		권장
	17. 비염세정기		초·중·고·특수		권장
	18. 휠체어		초·중·고·특수		권장
5. 보건 교육용 기구	1. 성교육용 도구		초·중·고·특수	학교당 2가지 이상	필수
	2. 흡연예방교육용 도구		초·중·고·특수	학교당 1	필수
	3. 교육기자재 보관장		초·중·고·특수	적정소요량	권장
	4. 안전교육용 도구		초·중·고·특수		권장
	5. 구강(치아) 모형		초·중·고·특수		권장
	6.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		초·중·고·특수		권장
	7. 기타 태아모형 등 보건교육 교구		초·중·고·특수		권장
6.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용품	여성용품(생리대)		초·중·고·특수		필수
7.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초·중·고·특수		권장



참고자료 2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

1. 학생건강검사기록 중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

-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

2. 재학생, 전입학·편입학, 상급학교 진학(졸업생 포함)

구분	이관(보관) 자료	방 법
초·중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전송) 및 출력물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교무업무시스템)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전·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4조제4항)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 고등학교 졸업 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12년간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 포함)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3. 미 진학, 휴학, 퇴학 등의 경우

- 교무업무시스템의 건강기록부 전산자료 및 종전 건강기록부는 해당 학교에서 5년간 보관

4.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관리방법

구분	보관방법	전출 시	전입 시	상급학교 진학 시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초1·4학년, 중·고1학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해당 연도만 학교에서 보관하고 1년 후 폐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관 가능)	보내지 않음	받는 서류 없음	이관하지 않음

※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반드시 내부결재 득(원본 1년 보관 후 폐기 가능)



참고자료 3

감염병 관련 규정

1.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3. 27., 2020. 3.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20. 8. 1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8. 3. 27., 2020. 12. 15.>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시행일: 2021. 6. 16.]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역학조사)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8. 11.>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소독횟수 등)**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비고
	4~9월까지	10~3월까지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8호·제9호·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20. 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제37조(소독업의 신고)

-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4.12.31.>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 <2014.12.31.>
 -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2. 등교중지 관련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20. 10. 20.>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제22조(등교 등의 중지)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6. 8.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 임시휴업·임시휴교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제47조(휴업일 등)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9. 24.>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 9. 24.>

4. 출석·결석 관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 1. 4., 일부개정)(시행 2021. 3. 1.)

제8조(출결상황)

-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 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법정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시행 2022. 1. 13.)

구분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6종)	제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쯤쯤가무시증 11. 렘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6. 크로이츠펔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인플루엔자 2. 매독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침균균딜로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 20. 급성호흡기감염증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참고자료 4

결핵 관련 사항

[학교 ⇒ 보건소 통보(서식)]

학교 내 결핵 환자(의심자) 발생 및 발견 통보

수신 : ○○ 보건소장

발신 : ○○ 학교장

보고 일시 _____ 보고자 _____

이름	학년/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학교 비치용]

결핵 환자 명부(학생, 교직원)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주 소	발견 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완치 여부	비고

* 발견근거 : 학교 정기검진, 학교 별도검사, 개별검사 등으로 구분 기록

*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 보건소 등록여부, 치료과정 등을 간략히 누가 기록

[보건소 ⇒ 학교통보 서식]

학교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내역(학생, 교직원)

수신 : ○○ 학교장

발신 : ○○ 보건소장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발견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도말결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치료 결과	비 고

* 치료결과는 치료종결 시 송부

	결핵 예방 안내 (예시)	제10- 호 00 학교
--	----------------------	-----------------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날,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결핵으로 매일 약 4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현재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多劑)내성결핵 (MDR-TB)'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 등의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도 결핵은 매년 3만 4,000여명이 발병, 2,3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다음 사항을 참고 하시어 자녀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결핵(Tuberculosis)이란?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폐를 침범할 뿐만 아니라 뼈나 관절, 뇌 등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2 결핵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결핵은 주로 결핵을 가진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항결핵제 치료 후 14일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학생의 건강을 위해 2주간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3 결핵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전신적인 무력감, 체중감소, 열, 밤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결핵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침, 객혈(가래에 피가 섞임), 흉통 등의 증상이 있고 영아의 경우에는 객담을 동반하지 않는 기침, 경도의 호흡곤란 및 미열 등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4 결핵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내과적 치료가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6개월간 아침 7시 공복에 약물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 합니다.

5 결핵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 BCG 예방접종을 통해 결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2) 접종시기 : 생후 4주 이내

● 면역력 높이기

우리나라 결핵의 특징 중 하나로 20~30대 결핵환자가 많은 것(20~39세가 38.7%)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등 영양환경이 빈약하고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 활동을 즐기는 10/20대가 결핵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가 결핵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과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환기를 자주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 환기 자주 하기

결핵은 결핵균을 가진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합니다. 특히 환자가 있는 곳에는 더욱 자주 환기를 시켜 결핵균의 밀도를 낮추어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 결핵환자에 노출된 사람은 결핵약 예방 투여

결핵환자에 노출된 사람은 피부반응 검사로 감염 여부를 파악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 판단에 의해서 결핵약을 발병 예방 목적으로 6개월 혹은 그 이상 투약합니다.

6 등교중지 안내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항결핵제 치료 후 14일까지 등교중지 대상입니다.

등교 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등교중지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관계법령〉

- ◆ 학교보건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 ◆ 교육부훈령 제29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별지 제8호의 2번 나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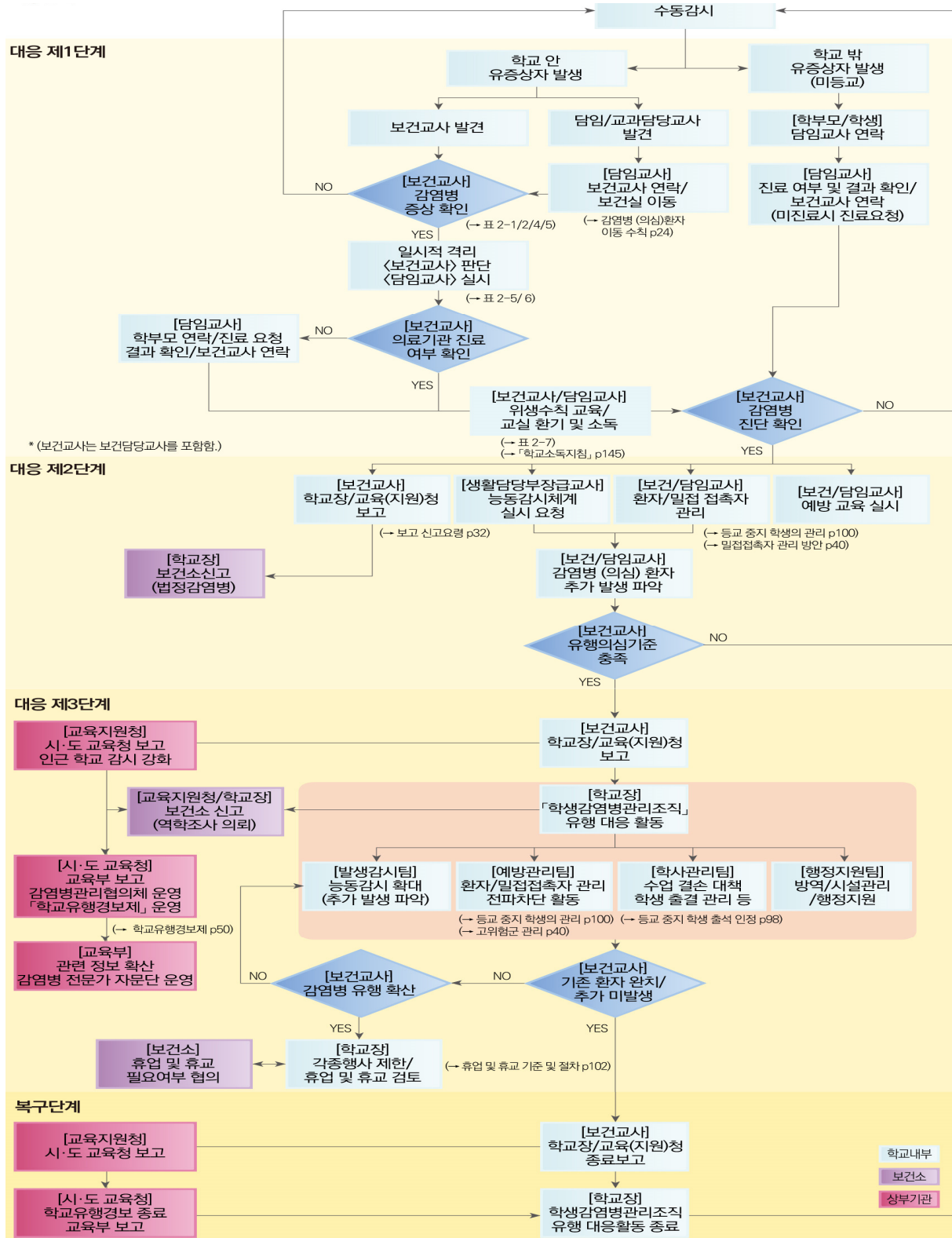
20 . . .

○○ 학교장

참고자료 5

평상시 감염병 대응 흐름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참조)





참고자료 6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기준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관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연 건 물	〈건물〉
	금 연 시 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〇〇〇 - 〇〇〇〇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생 건강검사 관리

참고자료 7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검진 비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2)

검사항목		검진수가	초		중	고	검사방법(세부항목)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1. 척추			○	○	○	○	척추염·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2-1. 시력 측정	기본검진 (8,840원)	○	○	○	○	가.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 왼쪽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다.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2-2. 안질환		○	○	○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3-1. 청력		○	○	○	○	가.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나.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3-2. 귓병		○	○	○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	○	○	○	코결막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	○	○	○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 및 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	○	○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7-1. 치아상태	7,830원	○	○	○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 검사
	7-2. 구강상태		○	○	○	○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검사	8-1. 소변	760원	○	○	○	○	요검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8-2. 혈액	혈당	1,310원	○	○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가.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간 세포 효소(AST·ALT) 나. (여)고등학생 : 혈색소
		총콜레스테롤	1,560원	○	○	○	
		HDL	6,320원	○	○	○	
		중성지방	3,730원	○	○	○	
		LDL	-	○	○	○	
		AST	1,880원	○	○	○	
		ALT	1,840원	○	○	○	
		혈색소	1,030원			○	
	8-3. 결핵	직접촬영(14"×14")	8,150원		○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CR 또는 DR	6,810원				
		Full PACS	7,720원				
	8-4. 혈압	기본검진	○	○	○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비만학생)	기본검진			○	○	○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인당 검진비용(단위 : 원) ○ 산정 기준 - 결핵검사: 직접촬영 수가	남학생	정상	17,430	17,430	25,580	25,580	○ 적용기준 · 검진수가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1호, 2021.12.31.) · 건강검진운영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기획부-3439호 2021.8.2.)
		비만		34,070	42,220	42,220	
	여학생	정상		17,430	25,580	26,610	
		비만		34,070	42,220	43,250	

* 비만학생 검사항목 중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의 경우 자동 산출 가능(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미만일 때)

▶ 중성지방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안내

* 결핵CR :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중·고 결핵 검사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 별도검사 비용 : 구강검진(7,830원), 소변검사(800원), 결핵검사(3,600원)



참고자료 8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2)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교: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

(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참고자료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교육부 고시 제2020-21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 양측 장골능(ili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눈	<table border="1"> <tr> <td>가. 시력측정</td><td>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td></tr> <tr> <td>나. 안질환</td><td>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td></tr> </table>	가. 시력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가. 시력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3. 귀	<table border="1"> <tr> <td>가. 청력</td><td>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td></tr> </table>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가. 청력	•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나. 귓병	•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냐 종괴 유무 확인 •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4. 콧병		•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5. 목 병		• 편도선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확인 •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성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발 부위 관찰 •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구강	가. 치아상태	•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검사 •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나. 구강상태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나. 혈액	•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 - 고1 여학생 : 혈색소 •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다. 결핵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검사 항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라. 혈 압 •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격으로 총 2회 측정 •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 •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인한 뒤 판정 필요 •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9. 허리 둘레	• 비만학생에 대한 허리둘레를 다음 방법으로 측정 • 양발 간격을 25~30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 시킨 후 숨을 편안히 내쉬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갈비뼈 가장 아래와 골반의 가장 윗부분(장골능)의 중간부위를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하여 0.1cm까지 측정
10. 그 밖의 사항	•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9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자료 10

검진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

(교육부 고시 제2020-21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정 상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 의사가 한다.

2.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귀	청 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코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빈혈증 질환	혈색소 - 여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10세 이상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미만	정상 ≤ 45
			10세 이상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 2+, 3+, 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 2+, 3+, 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 126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콜레스테롤증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혈압판정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 도표에서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해야 함

참고자료 11

체질량지수의 성장도표 백분위수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2017)

◎ 체질량지수 : 남아(6~17세)

(단위: kg/m²)

연령 (학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초1)	13.7	13.9	14.3	14.6	15.1	16.0	17.0	17.6	18.1	18.8	19.2	20.2
7(초2)	13.7	14.0	14.5	14.8	15.3	16.4	17.6	18.3	18.8	19.6	20.2	21.4
8(초3)	13.8	14.2	14.7	15.1	15.7	16.9	18.3	19.2	19.8	20.7	21.4	22.8
9(초4)	14.0	14.4	15.1	15.5	16.2	17.6	19.2	20.2	20.9	22.0	22.7	24.2
10(초5)	14.3	14.7	15.5	16.0	16.8	18.4	20.2	21.2	22.0	23.1	23.9	25.5
11(초6)	14.6	15.1	15.9	16.5	17.4	19.1	21.1	22.2	23.0	24.2	25.0	26.7
12(중1)	15.0	15.5	16.4	17.0	17.9	19.8	21.8	23.0	23.8	25.1	25.9	27.6
13(중2)	15.5	16.0	16.9	17.5	18.4	20.3	22.4	23.6	24.4	25.7	26.5	28.2
14(중3)	16.0	16.5	17.4	18.0	18.9	20.8	22.8	23.9	24.8	26.0	26.9	28.5
15(고1)	16.5	17.0	17.9	18.5	19.4	21.2	23.1	24.2	25.0	26.2	27.0	28.6
16(고2)	17.0	17.5	18.3	18.9	19.8	21.6	23.5	24.5	25.3	26.4	27.2	28.7
17(고3)	17.4	17.9	18.7	19.3	20.2	21.9	23.8	24.8	25.5	26.6	27.4	28.8

◎ 체질량지수 : 여아(6~17세)

(단위: kg/m²)

연령 (학년)	체질량지수 백분위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초1)	13.4	13.7	14.1	14.4	14.8	15.8	16.9	17.5	18.0	18.7	19.2	20.3
7(초2)	13.4	13.7	14.2	14.5	15.0	16.1	17.3	18.1	18.6	19.5	20.1	21.4
8(초3)	13.5	13.8	14.4	14.8	15.3	16.6	18.0	18.8	19.5	20.4	21.1	22.5
9(초4)	13.7	14.1	14.7	15.1	15.8	17.2	18.8	19.7	20.4	21.5	22.2	23.7
10(초5)	14.0	14.4	15.1	15.5	16.3	17.8	19.5	20.6	21.3	22.4	23.2	24.8
11(초6)	14.3	14.8	15.5	16.0	16.8	18.5	20.3	21.4	22.1	23.3	24.2	25.8
12(중1)	14.8	15.3	16.0	16.6	17.4	19.1	21.0	22.1	22.9	24.1	25.0	26.7
13(중2)	15.4	15.9	16.6	17.2	18.0	19.7	21.6	22.8	23.5	24.8	25.6	27.3
14(중3)	15.9	16.4	17.2	17.8	18.6	20.3	22.2	23.3	24.0	25.2	26.0	27.6
15(고1)	16.4	16.9	17.7	18.3	19.1	20.8	22.6	23.6	24.3	25.4	26.2	27.7
16(고2)	16.8	17.3	18.1	18.6	19.4	21.0	22.8	23.8	24.5	25.5	26.3	27.7
17(고3)	17.0	17.5	18.2	18.7	19.5	21.1	22.8	23.8	24.5	25.5	26.2	27.7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2017〉 정상 과체중 비만



참고자료 12

연령·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교육부 고시 제2020-21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¹⁾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참고자료 13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및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9판, 안효섭편, 2007

참고자료 14

학생 건강검사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교육부 고시 제2020-217호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 ·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결막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 ~ +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 ~ +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HDL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LDL (계산값)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 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15

학생 구강검사결과통보서 작성 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충치	이상 유 · 무에 따라 - ‘없음’ -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충치의 총수를 기재 (좌악과 우악을 구분하지 않음)
2. 충치발생 위험치아	상 동
3.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함)	상 동
4.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이상 유 · 무에 따라 - ‘없음’ - ‘있음’
5. 부정교합	이상 유 · 무에 따라 - ‘없음’ - ‘교정필요’ - ‘교정 중’
6. 구강 위생 상태	위생 상태에 따라 - ‘우수’ - ‘보통’ - ‘개선요망’
7. 그 밖의 치아 상태	치아 상태에 따라 - ‘과잉치’ - ‘유치잔존’ - 그 밖의 치아 상태 기재
8. 치주질환 (잇몸병)	이상 유 · 무에 따라 - ‘없음’ - ‘잇몸출혈/비대’, ‘치석형성’, ‘치주낭형성’에 표기하고 그 밖의 증상 기재
9. 턱관절 이상	이상 유 · 무에 따라 - ‘없음’ - ‘있음’
10. 치아마모증	상 동
11. 제3대구치(사랑니)	정상 여부에 따라 - ‘정상’ - 이상이 일 때 기재
12. 종합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결과 및 문진결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담당 의사가 종합 의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기재 ※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교육) 실시

참고자료 16



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 일반 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 병원	가. 의사 :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 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화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 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2019.9.27.

□ 구강 검진기관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2013. 3. 23.부터 적용사항

참고자료 17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9])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다 「2022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 주요 변경사항

[학교보건관리 분야]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변경내용	비고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2) 학교보건실 개선(현대화) 추진 가) 학교별 자체 보건실 개선(현대화) 추진 강구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 하여 학교자체 예산 확보 또는 지방자치 단체 협조(교육지원사업) 요청 등을 통해 보건실 현대화 추진 노력	〈 p 2 〉 2) 학교보건실 개선(현대화) 추진 가) 기간: 2022. 3. ~ 12월 나)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50개교 다) 내용 ▶ 노후 학교보건실 현대화 개선 사업비 지원 ▶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매뉴얼 개정 ※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라) 주요시설 및 구성 ▶ 보건실 공간: 처치공간, 상담실, 안정 실, 보건업무공간, 다용도 공간, 수납공 간, 대기공간, 소아당뇨 학생 주사처치 실 등 ▶ 보건교육실 또는 감염병 학생 별도 관리 실: 책걸상, 교육용 교구 등	*2022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추가)
학생 건강검사	바) 소변검사 검사기관 관할 지역 - 한국학교보건협회(강북지역)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 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 구(14개 자치구) - 대한결핵협회(강남지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 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11개 자치구)	〈 p 6 〉 바) 소변검사 검사기관 관할 지역 - 학교건강지원협회(강동지역)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 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남 구, 송파구, 강동구(11개 자치구) - 한국학교보건협회(강서지역)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 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14개 자치구)	*학생 별도검사(소변검사) 검진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기관 선정 *소변검사 검사기관 관할지역 변경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단위에서도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편성·운영	〈 p 14 〉 - 학교 단위에서도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편성·운영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학교 내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	*감염병 업무가 특정한 사람에게 과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안내(추가)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변경내용	비고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마) 평상 시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및 국가 위기상황을 가상하여 학교가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2017년~)	〈 p 15 〉 삭제	*감염병 유행상황으로 감염병에 효율적·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교직원 연수로 대체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1)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나이스(NEIS)를 통해 즉시 환자 발생 현황 보고 및 통계관리	〈 p 16 〉 (1)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나이스(NEIS)를 통해 즉시 환자 발생 현황 보고 및 통계관리 ※ 코로나19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특이사항보고 등 자체 보고형식으로 같음	*코로나19 확진 보고 관련 학교 현장혼란을 방지하고자 안내(추가)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4)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20. 6. 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학교보건법 제9조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명시 나)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된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다)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3)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문 부처와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가)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나)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 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초등 저)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 p 21 〉 (4) 학교보건법 개정·시행(2020. 6. 11.)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마약퇴치운동본부 학교급별 동영상, 교사 지도서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활용 나)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된 약물 오·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다)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2022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변경내용 반영, 학생건강정보센터 자료 확인(미등록 자료 삭제)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관리	1)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 p 24 〉 1)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다)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 2022. 3월~12월, 서울 관내 희귀난치성 학생 중 150명 지원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2022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추가)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변경내용	비고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관리		〈 p 26 〉 3) 의료비 지원(이주학생) 가) 미등록 이주학생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의료비 지원 나)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지원 ※ 세부계획 수립 후 별도공문 시행예정	*2022년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추가)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2) [교직원]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1971(2021. 2. 8.)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의무 교육시간 이수 유예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p 27~28 〉 (2) [교직원]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체육건강문화예술과-1971(2021. 2. 8.)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낮아질 때까지 의무 교육시간 이수 유예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결정(2020.6.19.)」, 2022년의 경우 교직원 백신접종률 및 일상회복 추진 등을 고려해 정상 시행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히 검토 후 추진 필요	*교육부의 「2022년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 개정내용 반영(추가)
참고자료	※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p 86 〉 (6) 환경부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내용 반영(추가)

※ 간단한 문구 수정사항, 경미한 법규 개정사항은 주요 변경내용에서 생략